

의안번호	2217751
의 퇴 인	김예지 의원
회 답 일	2026. 4. 14.
추계번호	26C1706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¹⁾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10조(실태조사)	정신건강 실태조사에 트라우마에 관한 내용을 포함	의무규정
2	안 제11조 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 등)	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트라우마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13조 (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실시)	경찰서, 소방서, 육·해·공군, 교정시설, 학교, 사업장 등은 <u>구성원이었던</u> 사람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·상담과 정신 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※ (현행) 해당 기관의 <u>구성원</u> 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※ 개정안 제132조제1항제1호~제4호에 명시된 기관은 현행법 시행령상에 규정된 기관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하는 내용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(실태조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1조 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 등)	
3	안 제13조 (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실시)	

1) 안 제7조(국가계획의 수립 등)에서는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‘트라우마’에 따른 정신건강 악화 우려자 발견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기존에 수립된 계획에 주요핵심 과제 중 하나로 “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”를 포함하고 있으므로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 시행 시 다음과 같은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(안 제10조)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트라우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조사범위 확대에 연구용역비 등이 증가할 수 있음
 - (안 제11조)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트라우마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관련 시책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(안 제13조) 경찰서, 소방서, 육·해·공군, 교정시설 등에서 과거 구성원이었던 사람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해당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실시될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알 수 없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